

—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학교급식법」 제3조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7조 제5항에 의거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, 품질이 우수한 농·축·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우수농·축·수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하고자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코자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명료화 (안 제2조)
 - 우수 농·축·수산물 :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것과 이를 원료로 제조·가공한 식품
 - 식품비 :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·부식·간식 등을 조리·가공·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·축·수산물을 구입·제조한 식품구입비
-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우수농·축·수산물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(안 제3조)
- 지원대상을 구미 시내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함. (안 제4조)
- 지원방법 및 신청의 절차 규정 (안 제6조)
-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- 13인이내 (안 제7조)
- 시장과 교육장 지도·감독 의무화 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「학교급식법」 제2조 내지 제4조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7조 제5항
- 시·군·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표준조례안 [도 자치행정과 -6343(2004.8.11)]
-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[경상북도 조례 제 2813호(2004.4.1)]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우수 농·축·수산물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은 식품비등의 용어 정의, 식품비지원 범위 및 지원대상, 지원신청방법,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, 지도·감독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음.
- 그동안 학교급식 지원관련조례를 제정하면서 「우리지역 국내에서 생산되는」 농·축·수산물을 사용토록하는 것은 WTO 농업협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관련조례를 부결한 바 있음.